단기 취업 또는 학업을 위해 미국에 입국하십니까?

저희는 귀하의 미국체류가 즐겁고 보람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귀하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귀하께는 권리가 있으며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귀하께는 다음의 권리가 있습니다.

- 공평한 대우와 임금을 받을 권리
- 귀하의 의지와 반하여 근무하지 않을 권리
- 본인의 여권 및 기타 신분증빙 서류를 본인이 소지할 권리
- 학대 신고시 보복을 받지 않을 권리
- 이민 및 노동 권리 조합 또는 기타 단체에 도움을 청할 권리
- 미 법원에 사법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이 팜플렛에는 위의 권리와 다른 정보들에 관한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만일 귀하께서 학대받았거나 귀하의 권리가 침해 당한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십시오.

National Human Trafficking Resource Center's
24 시간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 1-888-373-7888
(비 정부기관에서 운영)

Trafficking in Persons and Worker Exploitation Task Force Complaint Line
(월-금요일, 오전 9 시부터 오후 5 시까지 동부시간기준)1-888-428-7581
(미국 법무부기관에서 운영)

만약 귀하께서 신체적으로 위급한 경우 911 으로 전화를 하십시오

귀하께서 평등한 대우와 임금을 받을 권리에 관한 안내는 5 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귀하의 의지와 반대로 근무가 강요된 경우에 관한 안내는 7 페이지를 확인해주십시오.

이 팜플렛은 미국 연방법 (Public Law 110-457)에 의해 제작이 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미국법과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분들의 존엄성을 존중하기 위해서 이 팜플렛을 발행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인신매매와 노동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귀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귀하의 여권을 안전 하고 귀하께서 언제든지 쉽게 찾을 수 있는곳에 보관을 하십시오
- 여권, 비자, 고용계약서 사본을 귀하의 본국에 있는 가족 또는 친지에게 보관하게 하십시오
- 귀하의 본국 대사관의 연락처를 항상 알고 계십시오
- 귀하께서 미국에 도착 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팜플렛을 잘 보관하십시오
- 귀하께서 일한 날짜와 시간 또한 매일 받은 임금 액수를 기록을 해두십시오
- 귀하께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The National Trafficking Resource Center 의 Hotline 전화 1-888-373-7888 (24 시간) 또는 the Trafficking in Person and Worker Exploitation Task Force Complain Line 전화 1-88-428-7581 (월-금 오전 9 시부터 오후 5 시/동부시간기준) 로 전화를 하십시오

비이민 비자 신청절차 개요(안내)

비이민 비자란 무엇인가요?

비이민 비자란 개인이 특별한 목적으로(예: 취업 또는 학업) 미국을 여행하고자 입국을 신청할 수 있게 허가하는 미국 정부의 서류입니다.

비이민비자 신청절차에는 2 가지의 중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1. 해외에 주재한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
2. 미국 입국항의 이민관에서 비자를 제시함

도움말

미국을 방문하시기 전에, 모든 중요한 서류에 대해서 2 장 복사본을 만드십니다. 특히 (비자가 있는) 여권, 계약서, 귀하의 신분증. 이중 한장의 복사본은 귀하의 나라에 있는 믿을 수 있는 분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도착해서 I-94 를 받게 되면, 원본 I-94 를 분실할 경우에 대비해서 한장을 복사하십시오. 그리고 이 서류들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제 서류중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1. 비자. 여권 안에 비자가 있으며, 귀하의 사진과 비자의 만료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 비자가 만기 되었으면, 다시 그 비자를 갱신하기 전까지는 미국에 재입국 할 수 없습니다.

- 만약 귀하께서 취업비자 (employment-based visa)를 가지고 계시면, 귀하께서 미국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고용주의 이름이 비자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임시 취업비자(temporary work visa)는 귀하께서 고용주를 선택해서 일할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 귀하의 비자신청서(visa application)에 기재된 고용주만을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는 고용주의 변경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 이것은 고용주가 귀하를 학대하거나 착취하는 경우에도 계속 고용주를 위해서 일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2. I-94 카드. 미국에 입국하실 때 귀하에게 제공되는흰색의 카드입니다. 귀하의 I-94 카드에는 미국내에서 허가된 체류 기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카드를 분실하지 마십시오.

도움말

미국에 도착하시게 되면, 귀하께서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안전한 곳에 여권과 여행 서류를 보관하십시오. 고용주가 귀하로 부터 여권을 뺏어서보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미국내 일하는 곳에서 귀하의 권리

비자 종류에 따라서 귀하가 받으실 수 있는 여러가지 보호 사항이 있습니다.
비자 종류에 따른 개요

A-3, G-5 와 B-1 가사 노동자 비자

- 외교관(A-3 비자), 또는 국제 기구의 대표 (G-5)를 위해서 일하는 경우, 또는 B-1 비자를 가진 가사 노동자인 경우, 고용주는 미국 법에 부합하는 노동계약서를 귀하에게 제공해야만 합니다.
- 계약서에는 다음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여권, 고용 계약서, 그리고 다른 개인적인 물건들을 고용주가 보관하지 않는다는 고용주의 동의
  - 미국내 모든법을 지키겠다는 고용주의 동의
  - 근무한 것에 대해서 급여를 언제 지급하고 얼마나 지급하는지에 관한 설명
  - 직무, 1 주일의 노동시간, 휴일, 병가와 휴가제도에 관한 설명
- 계약 조건을 잘 이해하셨는지 확인하십시오. 계약서에 쓰여진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신다면, 본인이 신뢰할 수 있는 분께 계약서를 보여드리고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읽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본인이 이해하기 전까지는 어디에도 서명을 하지 마십시오.**
- 비자를 신청하시게 되며, 미국 영사가 귀하를 만나게 되며 귀하의 계약서가 미국법에 부합하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미국 영사에게 어떠한 질문을 하는 것을 망설이지 마십시오. 고용주는 비자 면접시 같이 있지 않아야 합니다.
- 만약 귀하의 권리에 반하는 계약서에 서명을 하거나, 또는 귀하의 고용주가 계약서 대로 하지 않는 경우, 여기 팜프렛에 기재된 HOTLINE 전화로 바로 전화하십시오. 그러면 귀하의 권리와 이러한 상황에 도움을 줄 변호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 드릴 것입니다.

H-1B, H-1B1 전문 직업인 비자

- 특별한 분야의 직업 또는 패션 모델로서 일을 하기 위해 미국을 오시는 경우 www.Travel.State.gov 에서 고용주 변경에 관한 권리와 자격에 관해서 좀더 많은 정보를 참고하십시오.

H-2A 임시 농업 근로자 비자

- 귀하께서임시 농업 근로자이신 경우, 귀하의 근로 조건에 관한 서면 설명서를 일하는 첫째날 전까지 받으셔야만 합니다. 이 문서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혜택, 임금, 거주 주택, 일하는 기간, 교통비 혜택 등에 관한 자세한 안내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귀하께서는 정부가 지정한 또는 그 이상의 임금을 받으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귀하께서 시간당으로 임금을 받으시던지 아니면 업무량(piece rate)으로 받으시던지간에 모두 적용됩니다.
- 귀하는 미국 사회보장 세금이나 비용을 본국에 있는 근로자 모집원(recruiter)에게 지불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 고용주는 깨끗하고 안전한 거주 주택을 무료로 제공해야 합니다.

- 고용주는 계약기간의 절반을 일하였을 경우에는 본국에서 귀하가 일하는 근무지까지의 교통비용을 귀하에게 상환하고, 계약이 끝난후에는 본국으로 귀국하기 위한 교통비용을 귀하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 계약기간의 전반기에 미국 근로자에 의해서 해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계약서에 기재된 일하는 기간의 ¾까지는 일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H-2B 임시 비농업 근로자

- 귀하께서 비농업 임시 근로자이신 경우, 일반적인 임금 또는 그이상의 임금을 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이 임금은 연방, 주, 또는 지역 법정 최소 임금 또는 그 이상입니다. 귀하께서 시간당으로 임금을 받으시던지 아니면 업무량(piece rate)으로 받으시던지간에 모두 적용 됩니다.
- 고용주는 귀하의 근로가 끝나거나,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근로태도와 관련되지 않은 다른 이유로 해고가 된 경우에는 본국으로 가기 위한 교통 비용을 제공해야 합니다.
- 귀하는 미국내에서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미국 근로자들과 같은 근로조건을 일반적으로 부여받게 됩니다.
- 귀하는 본국에 있는 근로자 모집원에게 절대 돈을 지불하지 마십시오.

J-1 문화교류 비자

- 연방정부의 후원을 받는 프로그램이 아닌 경우라면, 프로그램이 최소 3주 이상 이어야 합니다. J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기본 서류인 DS-2019 양식에는 프로그램의 날짜와 어떤 문화교류인지가 나와있습니다. 문화 교류 범주에 따라서, 교환프로그램의 기간 동안의 계약서 또는 다른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후원자의 광고는 반드시 정확해야 하며, 모든 경비, 조건, 교환 프로그램의 제한등을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후원자는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해야 하며, 프로그램에 관한 다음과 같은 안내를 해야만 합니다.
  - J-1 프로그램, 참여하는 특별한 프로그램과 규정등에 관한 설명
  - 미국입국과 여행
  - 거주 주택
  - 수업료, 생활비를 포함한 비용, 건강관리, 보험 비용
  - 미국내 생활과 관습
  - 지역 자료
  - 귀하의 후원자의 주소와 미국내에서 귀하를 책임지는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
  - 미국무성의 교환방문자 프로그램의 연락처 정보
  - 미국무성의 교환방문 프로그램 안내문

- Summer Work Travel 프로그램으로 입국하셨는데 사전에 일할 곳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후원자는 도착한 첫주 이내에 귀하께서 일할 곳을 찾지 못한 경우 귀하가 일할 곳을 찾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또한 같은 일을 하는 미국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것과 상응하는 혜택과 임금을 받으실 수 있음을 확인하십시오.

- 연수와 인턴쉽 프로그램을 위한 J-1 비자
  - 후원자는 반드시 직접 또는 전화나 웹 카메라로 면접을 해야 합니다.
  - 후원자는 귀하의 비자 서류가 제출되기 전에 Training/Internship Placement Plan (Form DS-7002)라는 것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양식은 귀하가 받게 될 임금과 이 프로그램의 교육목적 요약이 서면으로 기재한 것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후원자는 귀하께서 지불해야 되는 수업료와 비용, 예측되는 미국내 생활비등을 서면으로 주어야 합니다.
  - 연수/인턴쉽은 적어도 주당 32 시간이어야 합니다.
  - 연수/인터쉽이 농업인 경우, 일하는 조건과 임금은 반드시 연방 정부의 농업근로자의 조건에 엄격하게 상응해야 합니다.

- 후원자가 이 비용을 내거나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반드시 귀하의 의료 보험 적용을 안내해 주어야 합니다.

- 미국에서 일하시는 경우, 사회보장번호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며, 고용주는 이 번호를 이용해서 모든 세금 징수를 보고해야 합니다.

- 배우자와 자녀를 J-2 비자로 데려오는 경우, 수입이 귀하를 부양하기 위함이 아니면 취업 허가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비자 종류와 미국 입국 절차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 www.Travel.gov 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자 자격(visa status)과 상관 없는 권리

비자 자격과 상관 없는 많은 권리가 귀하에게는 있습니다. 만약 이런 권익이 침해 당하였으면, 정부 시행 기관에 위반 행위를 보고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처벌됨에 대한 걱정 없이도 귀하의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반드시 보호 받아야 되는 권리

- 고용주가 귀하를 체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민국 또는 경찰에 귀하를 신고한다는 협박. 귀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만약 고용주가 어느 때고 협박을 한다면, 도움을 바로 요청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귀하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2. 임금을 받아야 하는 권리

- 귀하가 한 모든 일에 관해서미국 직원들과 같은 방법으로 임금을 받아야 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 귀하는 연방 정부의시간당 최소 임금인 $6.55 을 그리고 2009 년 7 월 24 일 부터는 $7.25 을 미국인 직원들과 같은 방법으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귀하가 일하는 주의 최소 임금이 이 보다 더 높은 경우 귀하는 더 높은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귀하의 계약서도 고용주가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움말

귀하께서 일한 시간을 모두 기록을 하십시오. 노트장에 귀하께서 일한 시간과 날짜, 급료, 급료를 받은 날짜들, 급료에서 제외된 액수, 그리고 제외된 액수의 이유를 기제하십시오.

- 미국내 대부분의 근로자는 주당 40 시간 이상을 일했을 경우 임금의 1.5 배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당 $10 임금을 받는 분들의 경우 일주일에 40 시간 이상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된 시간당 $15 씩 받게 됩니다.
- 만약 고용주가 귀하의 임금에서 돈을 공제하여 가져가는 경우. 귀하의 합법적인 임금을 감소하게 하는 공제의 대부분은 불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용주는 주로 주택거주 비용, 유니폼, 안전 장비 또는 취업모집 비용을 공제하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어떤 비자 조항에는 거주 주택이 무료로 제공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3. 차별받지 않을 권리

- 근로자로서 성별, 인종, 출신국, 피부색, 종교, 신체장애(disability)로 인해서 일을 하는데 있어서 차별 또는 부당하게 대우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고용주는직원의 성별, 인종, 출신국, 피부색, 종교, 신체장애가 무엇이든지 간에 같은 일을 하는 각각의 직원들에게 동등한 관심을 기울어야 하며, 각각의 직원에게 동등한 직업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 고용주는 직장에서 영어가 필요한 중요한 업무적인 이유가 있지 않는한 직장에서 영어로만 말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4. 여성 근로자로서의 권리

- 고용주는 여성이거나 임신을 하였다고 해서 귀하를 다르게 또는 부당하게 대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성차별입니다. 귀하가 여성이건 남성이건간에 고용주는 귀하를 성적으로 괴롭해서는 안됩니다. 고용주는 아래 사항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 성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것
  - 성적인 접촉하는 것
  - 성적이거나 불괘한 말을 하는 것

도움말

고용주가 적절하지 않은 말이나 행동을 할때마다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으시고 이를 목격한 사람들의 정보(이름/전화번호)도 기록하십시오

5. 건강하고 안전한 작업장에서 일할 권리

- 모든 근로자는 안전하고 깨끗한 작업장에서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 거주 주택: 고용주가 거주주택을 제공하는 경우, 깨끗하고 안전하고 튼튼한 구조의 집이어야 합니다.
  - 화장실: 화장실을 깨끗하고 접근이 쉬워야 합니다.
  - 휴대용 물: 농업일을 하시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과 손을 씻을 물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병 또는 작업장에서의 상해: 작업장에서 상해를 입거나 아프게 되면 의료조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의료조치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상해를 입은 동안의 임금 손실의 일부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약품이 있는 곳에서 일하시는 경우 또는 취급하는 경우
  - 유해물질/화학약품을 다룬 후에는 깨끗한 물로 손을 씻을 권리가 있습니다. 일하는 첫 5 일 동안에는 유해 물질에 대한 안전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고용주는 유해 물질의 우발적인 노출을 피하기 위해서 언제 어디로 분사되어져야 하는지 말해주어야 합니다. 직원들과 다른 사람들은 유해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있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
귀하의 고용주가 귀하의 임금을 담보로 귀하가 그 어떤 행동이나 어디든지 가는것, 또는 귀하 본국으로 돌아가는것을 막을수는 없습니다.

- 만약 귀하께서 보호장비(예를 들어, 몸 전체를 덮는 작업복, 마스크, 또는 방독면)가 필요한 화학약품을 다루는 일을 하는 경우 귀하의 고용주는 반드시 깨끗하고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위의 장비를 제공을 해주어야 합니다

  - 긴급한 의료상황: 긴급한 의료상황이 발생한 경우 911 으로 전화를 하셔서 앰블런스를 요청하십시오.

- 귀하의 의료비는 지원을 받으실수도 있으므로 귀하의 고용주에게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연락을 해서 서류 작성을 요청하십시오

- 병원에 가신 경우 귀하의 병력 또는 부상에 관한 진단서 사본를 요청하십시오

6 귀하는 노조/(노동조합)와 단체 교섭권 이 있습니다

- 몇가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연방법에 따라 고용인들은 미국이민상태에 관계없이 노조를 만들거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고용주는 귀하께서 위와 같이 행동한다고 귀하께 불리한 조취를 취할수 없습니다. 귀하는 아래 기재된 행동을 하실수 있습니다. (귀하는 아래 권리가 있습니다.)

- 근무환경과 근무수당의 향상을 위해서 다른 직원들과 협조

- 집회, 연설회, 데모 같은 행사에 참여

- 노조 또는 다른 직원들의 노동조합에 가입

7. 주정부 법에 따라 귀하께서 더 많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 여기 팜플렛에 적혀있는 핫라인/긴급 전화로 전화를 하시면 귀하 직장에서 받을 수 있는 귀하의 권리를 알려드릴것입니다

8. 악덕업체를 떠날 수 있는 귀하의 권리 (학대 받는 직장을 떠날 수 있는 귀하의 권리)

- 귀하께서 귀하의 고용주로부터 학대를 받으실 경우 직장을 떠나실 수 있습니다
- 단 귀하께서 취업비자로 오셨다면 그 직장을 떠나는 순간부터 귀하의 비자는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소지하고 계신 비자종류에 따라 귀하의 비자종류 변경 또는 직장을 변경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귀하께서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는 근무를 하면서 정식으로 불만을 제기하거나 법적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이러한 귀하의 권리를 제제하는/막는 경우 고용주에게는 벌금이 부여됩니다.
- 만약 귀하께서 현재 고용주와 문제가 있는 경우, 핫라인/긴급 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귀하의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단체로 연결해줄 것입니다.

도움말

미국내에서의 귀하의 권리는
그 누구도 뺏을수 없고
수백개의 기관들로 부터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귀하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신매매

1 인신매매란 무엇입니까?

인신 매매란 미국내 직장에서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학대입니다. 인신매매란 본인의 의지와 다르게 불법 이용/착취의 목적으로 취업, 이동, 또는 감금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인신매매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www.state.gov/g/tip (홈페이지에서 Legislation 의 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인신매매 보호법)을 확인해주십시오) 아래 상황들이 인신매매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협박과 공포:

고용주 또는 고용주를 도와주는 사람들은 아래의 방법으로 귀하 또는 다른 고용인들이 떠나지 못하게 협박을 할 것입니다

- 구타, 육체적인 학대 또는 성적인 학대
- 구타, 육체적인 학대 또는 성적인 학대를 당할 수 있음을 협박
- 고용인을 감금 또금 구금
- 만약 고용인이 떠나려고 하거나 잘못된 대우에 관한 불만, 이를 다른 기관에 신고 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경우, 고용인 또는 고용인의 가족을 협박
- 고용인이 떠나려고 시도하거나, 상황에 대한 불평을 하거나, 신고 또는 도움을 받으려 할 경우 추방이나 체포되게 하거나 또는 경찰에 인도하겠다는 협박
- 고용주 또는 고용주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떠나려고 하거나 불평, 신고 또는 도움을 구하는 고용인들을 위해하거나 협박 또는 탈출을 하면 다시 붙잡혀 올것이라고 협박

규칙과 통제

고용주와 고용주를 도와주는 사람들은 규정과 제제를 이용해서 고용인들이 떠나는 것이나 잘못된 대우에 관한 불평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힘들게 할것입니다 아래 예를 참고해 주십시오.

- 작업장을 떠날 수 없다는 규칙 또는 근무를 하지 않을때에도 갈 수 있는 곳을 통제
- 여권, 비자, 출생증명서 또는 다른 신원증명서류등을 본인이 보관 할수 없다는 규칙
- 충분한 식사, 수면, 또는 의료치료 제공의 거부
- 귀하의 가족, 다른 고용인들 또는 직장외 사람들과의 왕래/연락을 금함

속임수와 거짓말

고용주와 고용주를 도와주는 사람들은 거짓말로 아래와 같은 혼돈을 줄수 있을 것입니다

- 일하는 환경과 생활 환경에 관한 거짓된 약속
- 귀하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말함
- 귀하께서 도움을 요청시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거라고 말함
- 고용주의 신분에 관해서 거짓말을 하라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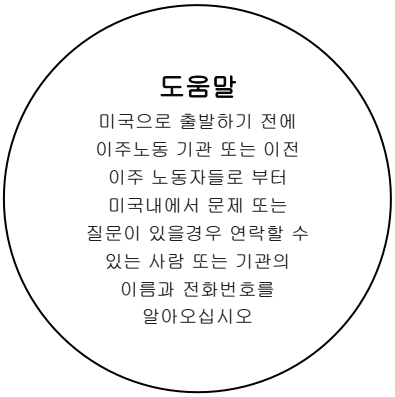

2. 저에게 위와 같은 일이 생기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만약 위와 같은 일이 귀하에게 발생되거나 위험한 상황에 계신 경우 911(긴급전화), 또는 1-888-373-7888 (The National Trafficking Resource Center) 또는 1-88-428-7581 (The Trafficking in Person and Worker Exploitation Task Force Complain Line) 전화로 바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위 기관들은 귀하를 해당 지역 담당 기관으로 연결을 해드릴 것입니다.
- 만약 귀하께서 신체적으로 위급한 상황에 처한 경우 전화 911 으로 연락을 해서 경찰의 도움을 받으실수있습니다. 경찰의 도움을 받을시 이 팜플렛을 보여주시면서 귀하께서 학대받은 상황을 설명하십시오

3. 만약 제가 학대를 신고할 경우 추방이 되나요?

학대 당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귀하께서 미국 체류에 관한 걱정때문에 도움을 받는것을 두려워 하지 마십시오. 귀하께서는 귀하의 고용주의 변호사가 아닌 이민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셔야 합니다. 긴급전화로 전화를 거실 경우 귀하께서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을 연결해줄것입니다.

- 만약 귀하께서 인신매매 또는 성폭력 또는 성희롱 같은 심각한 범죄에 피해자신 경우 다른 비이민비자종류 예를 들어 T 비자(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비자) 또는 U 비자(다른 심각한 범죄 피해자)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위의 비자들은 특정범죄 피해자분들을 위한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의 비자종류에 대해 생소할수 있으므로 귀하께서 도움을 받을시 도움을 주는 기관이나 사람들에게 위의 비자종류를 알려주십시오.

4.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위한 서비스는 무엇이 있나요?

- 미국내에서 인신매매의 피해자인 경우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 프로그램을 통한 이민구제 방법 또는 여러방법으로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 많은 기관들이 귀하께서 받을있는 의료치료, 정신적 치료, 체류, 치과 치료, 이민규정 또는 다른 법적문제, 취업도움, 또는 공공복리 에 관한 도움를 받을수 있습니다

귀하의 권리를 알고 계십시오

귀하께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이 팜플렛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십시오.

귀하께서 이 팜플렛을 받으신 이유는 귀하께서 미국내에서 취업 또는 공부를 하기 위한 비이민비자를 신청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팜플렛 안내문은 귀하께서 미국에 계실동안 귀하의 권리를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미국에 단기간 (임시) 체류하시게 되더라도 미국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들과 동일한 근로자권리(workplace rights) 가 있습니다.

이 팜플렛은 귀하에게 전반적인 근로자의 권리에 관한 안내를 제공해 드립니다. 귀하의 권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귀하께서 불이익을 받는것을 피하실수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미국에 계시는 동안 이 팜플렛을 소지하고 계십시오.

이 팜플렛은 귀하 자신을 인신매매와 같은 심각한 상황으로 부터 보호받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인신매매란 현대/근대화된 노예제도로 고용주 또는 다른 사람으로 부터 정신적 또는 신체적 으로 학대를 받고 자발적으로 떠날수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위 같은 사항에 있는것을 인식하는 것이 도움을 받기위한 첫번째 단계입니다.

미국에 도착 후 직장에서 문제가 발행한 경우, 즉시 도움을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고용주가 귀하는 법적 권리가 없다고 말을 한다고 해도 그말을 믿지 마십시오. 고용주나 직장을 연결해준 브로커들로 부터 법적 조언을 받지 마십시오. 귀하를 대변해줄 변호사만이 귀하께 법적 조언을 드릴수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법적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믿는 경우 여기 팜플렛에 기재된 핫라인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귀하께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해당 지역 단체를 알려 드릴것입니다. 위 지역단체로 연락을 하시는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위 지역 단체들은 귀하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단체입니다.

이 팜플렛은 법적 조언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단기 취업 과 유학/학업을 위한 비자종류는 다양하므로 귀하 비자에 관한 문의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귀하의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아래 수신자 부담 전화로 연락을 하십시오:
National Human Trafficking Resource Center
1-888-373-7888
(24 시간)

Trafficking in Persons and Worker Exploitation Task Force Complaint Line
1-888-428-7581
(월-금요일, 오전 9 시부터 오후 5 시까지, 동부시간기준)